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75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진성준・황정아・민병덕

정성호 • 문진석 • 박상혁

이학영 · 위성곤 · 정준호

이원택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7조의2(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제180조·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 정보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제180조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7조의2(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제
	174조・제176조・제178조・제1
	78조의2·제180조·제180조의4
	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
	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
	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